

20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관련 생태계 조성 기여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전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풍력,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 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효율향상, 원자력, 기타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제지, 비철금속, 전기전자, 이차전지, 유리, 자동차, 조선, 산업공통설비, 자원순환, 기타
건물	Zero에너지, 건물, 기타
수송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항공, 유통물류, 기타
수소	수소생산, 수소저장, 운송·이송, 기타
CCUS	CO ₂ 포집, CO ₂ 저장, CO ₂ 활용, 기타
기타	국외감축, 기타

※ 붙임 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에서 상세 소분류 및 예시 확인 가능

- (지원 방식)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 (지원 규모) 약 1,356억원('24년 예산 중 신규 프로젝트 지원규모)
- (자금 용도) 시설자금 또는 연구개발(R&D) 자금

< 대출금의 자금용도 및 주요내용 >

용도	주요내용
시설 자금	선도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 불인정사항 - 사전 인허가·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공사 비용 (사전 인허가·신고가 필수인 경우에 한함) - 토지매입비용, 부가가치세 비용 -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임대 및 매각 등 수익 목적의 시설 설치 비용
연구 개발 (R&D) 자금	선도프로젝트 관련 기술·공정·제품(소재·부품·장비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불인정사항 - 환급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및 부가가치세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 참고

※ 붙임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별표2 참조

-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시설 자금은 500억원, 연구개발(R&D) 자금은 100억원 이내*
- * 용도별로 시설자금은 500억원, 연구개발(R&D)자금은 100억원 이내로 함 (시설 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을 합산하여 프로젝트별 최대 500억원 인정)
- (융자비율)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 (지원기간)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p를, 대기업은 1.5%p를 차감하여 적용(1년 변동 금리)
- * 산출 금리가 1.3%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3%로 적용
- ** '24년 3분기 금리 고시(기재부) 전까지 중소·중견기업 1.33%, 대기업 1.83%로 적용
- (대출기관)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시중 취급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3 추진 절차

구분	추진절차	비 고	추진일정
공고 · 상담 · 접수	· 사업 공고 * 홈페이지 등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29.
	· 사전 상담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	용자지원 신청사업자 ↔ 취급은행	2.29.~4.3.
	· 신청·접수 * 온라인 제출 (http://www.kicox.or.kr/netzerofin)	신청사업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2.29.~4.3.
지원 대상 선정	·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평가 일정 안내	산단공	4.4.~4.11.
	·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	4월 중
	· 용자 추천순위 및 지원대상 결정	용자사업 심의위원회	4월 말
	·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산단공 → 선정사업자, 보증기관 (기술보증, 신용보증), 취급은행	5월초
자금 신청 · 심사 · 대출	· 보증 신청·심사·승인(선택사항) * 보증기관 보증심사 탈락 시 보증서 발급 불가	보증기관 ↔ 선정 사업자	5월~7월
	· 대출 신청·심사·승인 * 취급은행 대출심사 탈락 시 지원 불가	용자 선정 사업자 ↔ 은행	5월~7월
	· 융자금 대출	은행 → 용자 선정 사업자	6월~
프로 젝트 수행 · 성과 조사	· 프로젝트 수행 *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타당성평가 수행	선정 사업자	프로젝트 사업기간
	· 중간 진도점검 * 수행관리 및 애로사항 지원 등	산단공	분기별
	· 완료 보고	선정 사업자 → 산단공	프로젝트 완료 시
	· 성과 조사 *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보고서 제출	산단공 (+성과분석기관)	프로젝트 완료 후 3년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단계별 검토·평가를 실시하되, ①적합성 검토 → ②기술성 평가 → ③현장 확인(필요시) → ④용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구 분	세부 내용	방법
① 적합성 검토	지원자격 적합성, 법적·제도적 제재기업 여부, 중복 지원 여부, 지원분야 포함 여부, 제출서류의 신뢰성 등	서류검토
② 기술성 평가	정책 부합성, 기술 역량, 시장잠재력, 경영 역량 등	발표평가

- (적합성 검토) 신청 서류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지원 적합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기준
지원자격 적합성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중인 기업인지 여부
법적·제도적 제재기업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여부 • 한계기업 여부 • 동 사업 지침 위반 제재기업 여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여부
중복지원 여부	•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존재 여부 • 당해연도 전 기 추천한 프로젝트 여부 • 동일 내역에 대한 중복 신청 여부(계속사업 제외)
지원분야 포함 여부	• 프로젝트 분류 기준 해당 여부
제출 서류의 신뢰성	• 신청서류의 제출 완결 여부, 위·변조 확인 등

- (기술성 평가) 적합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받은 프로젝트에 한하여 평가
 - (평가항목) ①정책적 부합성, ②기술 역량, ③시장잠재력, ④경영 역량 등을 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 * 필요시 사업장 가동실태 및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 담당자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현장 방문
 - (평가방식) 기술성 평가는 대면 발표평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PPT 자료 발표
 - (평가진행) 프로젝트 당 최대 40분 배정, 총괄책임자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25분 진행(사전에 배포될 평가위원 질의 기반 진행)

- (평가기준)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항목별 평점 부여, 정부정책 방향,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따라 차후 변경될 수 있음

<기술성평가 세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정책적 부합성 (68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부합성	① 탄소중립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정성	3점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산정방법의 신뢰도	②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	60점
		③ 감축량 산정방법 신뢰도	정성	5점
	소계			68점
기술 역량 (15점)	기술혁신성	④ 핵심지표 산정 적절성	정성	2점
		⑤ 목표의 도전성	정성	3점
	기술경쟁력	⑥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	정량	3점
		⑦ 선도프로젝트 추진역량	정량	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추진 역량	⑧ 전담조직 보유여부	정량	2점
		⑨ 관련 인력 보유 현황	정량	2점
	소계			15점
시장 잠재력 (10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성	⑩ 선도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정성	2점
		⑪ 선도프로젝트의 시장경쟁력	정성	2점
	향후 10년의 시장규모와 매출 규모	⑫ 시장규모 예측의 적절성	정성	3점
		⑬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매출목표	정성	3점
	소계			10점
경영 역량 (7점)	친환경·저탄소 추진 역량	⑭ 친환경·저탄소 활동 실적	정량	2점
	계획수립의 충실도	⑮ 계획의 완성도	정성	3점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⑯ 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정성	2점
	소계			7점
합계				100점
가점 (2점)	중점지원 산업 해당 여부	⑰ 탄소감축 관련 국제규제 적용 산업*	정성	2점

*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서 탄소감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젝트가 EU CBAM (탄소국경조정제) 적용 산업(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 (평가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 하여, 60점 이상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자 처리 : 동점자는 ①기술역량, ②정책적부합성, ③시장잠재력, ④경영역량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선정·통보) 전담기관은 융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선정 사업자,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 통보

5 신청·접수

□ (신청) 전담기관(산단공)의 사업관리 시스템(<http://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신청자금 용도(시설/연구개발(R&D))와 프로젝트 분류 기준에 따라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9일(목) ~ 4월 3일(수) 18:00

※ 4. 3(수) 18시 이후에는 신청시스템(<http://www.kicox.or.kr/netzerofin>) 이용 불가

□ (접수 절차) 정보 입력·제출(신청기업) → 적합성 검토(전담기관)

→ 접수번호 발급(적합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받은 대상에 한하여 발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사업계획서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프로젝트 추진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대기업은 해당없음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증명원 제출(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 포함)
	발표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PPT 원본 파일을 제출
	온실가스 감축량 증빙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위임장	해당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시설 자금	부지(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신설 승인서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 등록증	기성제품 구매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제출
	건축 허가서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	감정평가 불가시, 동일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제출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기성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	신제품 전용 제조생산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R&D 자금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도입계획서	-
	프로젝트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 발표자료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6 유의사항

□ (지원제외) 다음 표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운영지침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보증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6.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7. 운영지침 <별표1>의 자금용도 및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8.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9. 他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다만,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10. 전년도 9월 30일 이전 착수사업
11. 당해연도 이전 既 추천한 사업

※ 붙임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 (성과검증) 선정된 사업자는 전담기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최초 자금 인출 후 30일 이내)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검증* 보고서(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 타당성평가 보고서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 검증 보고서는 국가공인 온실가스 검증 전문기관의 발급 건에 한하여 인정함

7 문의처

□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융자센터

☎ 070 - 8895 - 7186
070 - 8895 - 7388
070 - 8895 - 7219

[붙임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붙임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끝.